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1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생명공학육성법 개정('21.12.28.)으로 기존 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하는 '관계 중앙행정기관'의 시행령 위임근거가 삭제되어 후속조치로 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대통령령 제 호

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의2(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 위) 「생명공학육성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 기관을 말한다. 1. 외교부 2. 중소벤처기업부 3. 식품의약품안전처 4. 특허청 5. 질병관리청	<삭제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이선미 서기관	
연 락 처	(044) 202 - 4551